

##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75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3월 14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사오니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 I. 주요 개정 내용

#### 1. 개정 이유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1) 조문 정비(제28조 및 제30조)
  - 他조문 개정사항 반영(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
  -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제30조 제1항 제2호 한국선주협회 → 한국해운협회)
- (2)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별표8) 및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별표9) 기준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변경사항을 반영
- (3)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별지 제10호)

### II. 의견 제출

#### 1.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까지

#### 2.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3. 제출방법

-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우)30118
- (2)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 (3) 팩스 : 044-203-4710

##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대외무역관리규정 행정예고문

##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하현준 관세사

T 070-4353-1514  
E hjha@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